

중앙치매센터의 기능과 역할



2011년 9월 2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치매관리법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 종합·체계적 치료 관리

● 효과적 인프라 구축

● 부담 경감 및 인식 개선

복지부, 치매종합대책 관련 브리핑

9월 19일 / 서울 보건복지부 청사

LG

치매관리법

- 2010년 12월 6일: 발의 (유재중 의원)
- 2011년 6월 22일: 보건복지위 통과
- 2011년 6월 28일: 법사위 통과
- 2011년 6월 29일: 본회의 통과
(찬성 197, 기권 1)
- 2011년 7월 22일: 정부이송
- 2011년 8월 4일: 공포
- 2012년 2월 5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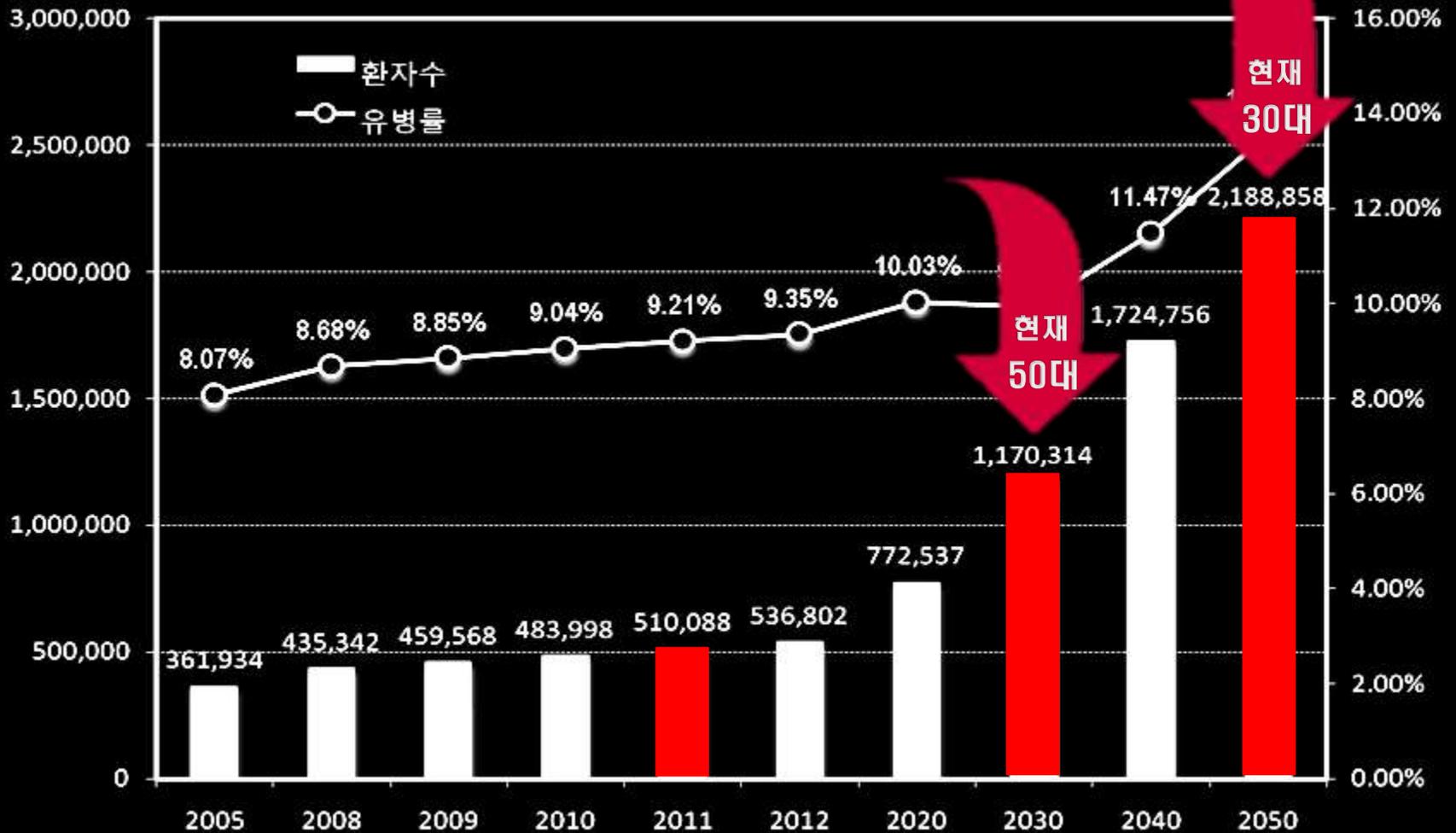
MBC HD

내년 2월부터 '치매관리법' 시행



LG

Dementia Epidemic in Korea



(김기웅 등. 전국치매역학조사. 보건복지부 2008; Kim et al. J Alz Dis 2011)

치매관리법: 목적

- 치매는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경제**
- 조기에 검진하여 진단하고 꾸준한 치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에도 **법률** **복지**
- 치매환자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 제공도 부족하여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연구** **예방** **치료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의학** **홍보** 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치료** **진단**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진단**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건강과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려 하는 것임.

치매관리법: 구성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제정 목적

제 2 조

용어 정의

제 3 조

관련 주체 의무

제 4 조

타 법률 관계

제 5 조

치매극복의 날

제 2 장

치매관리종합계획

제 6 조

치매관리종합계획

제 7, 8, 9 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 3 장

치매연구사업

제 10 조

치매연구사업

제 11 조

치매검진사업

제 12 조

치매의료비지원

제 13 조

치매등록통계사업

제 14 조

치매역학조사

제 15 조

자료제공협조의무

제 16 조

중앙치매센터

제 17 조

치매상담센터

제 4 장

보칙

제 18 조

사업비 지원

제 19 조

비밀 유지

제 20 조

위임 위탁

제 5 장

벌칙

부칙

시행, 경과조치

**치매종합
관리대책**



치매관리법

**National
Alzheimer's
Project Act
(USA)**

**National
Alzheimer
Plan
(France)**



중앙치매센터: 기능

치매 관련 연구
기획 관리

치매연구사업 국내외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사업 계획 작성
치매연구사업 과제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연구사업 결과 평가
및 활용

연구 동향
치매연구사업의 성과 평가

치매 관련 서비스
지원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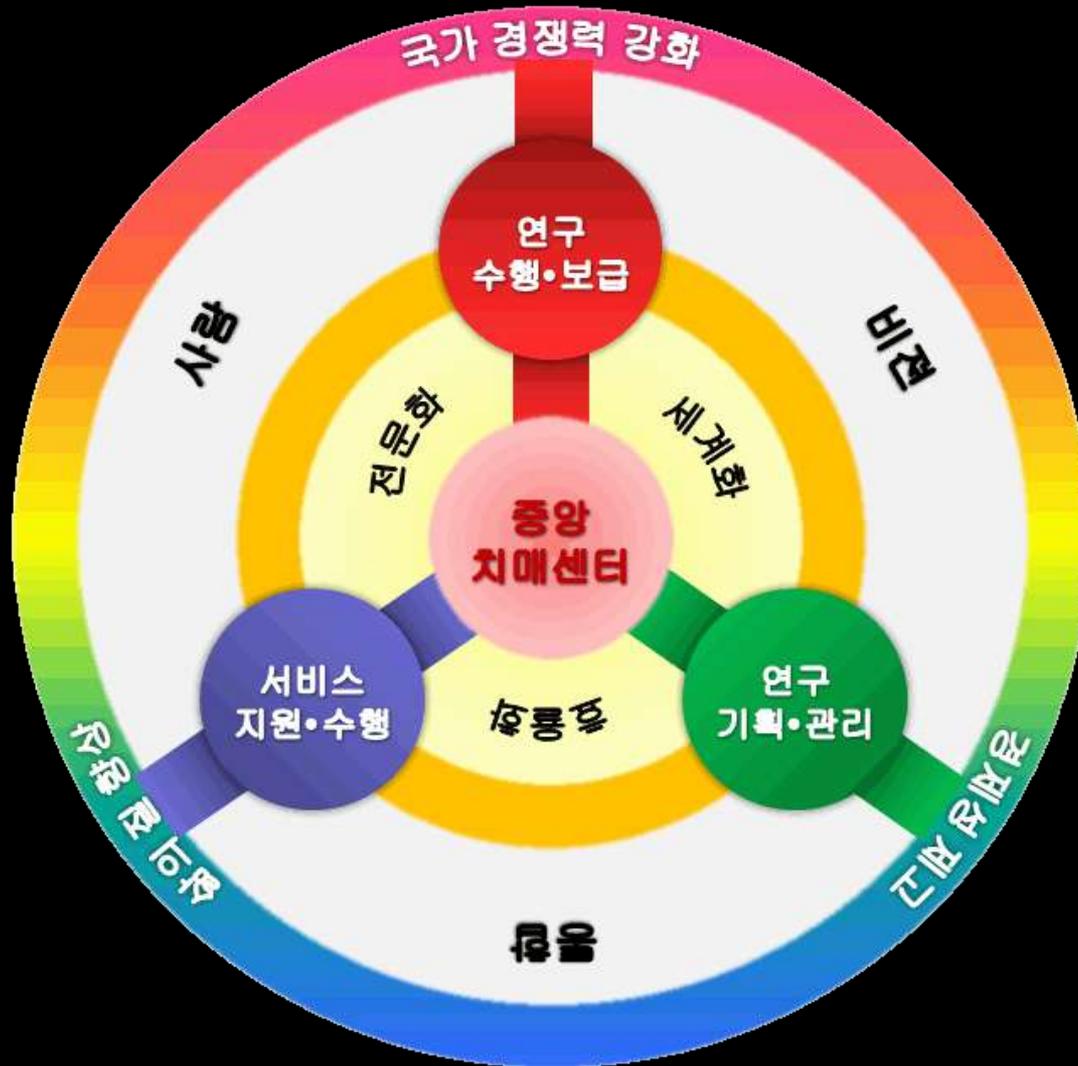
재가 치매환자 관리사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지원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치매 관련 연구
수행 보급

치매환자 진료
치매와 관련된 정보,
통계 수집, 분석 및 제공
치매의 예방, 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노년 연구
치매 관련 연구 지원

중앙치매센터: 역할



중앙치매센터: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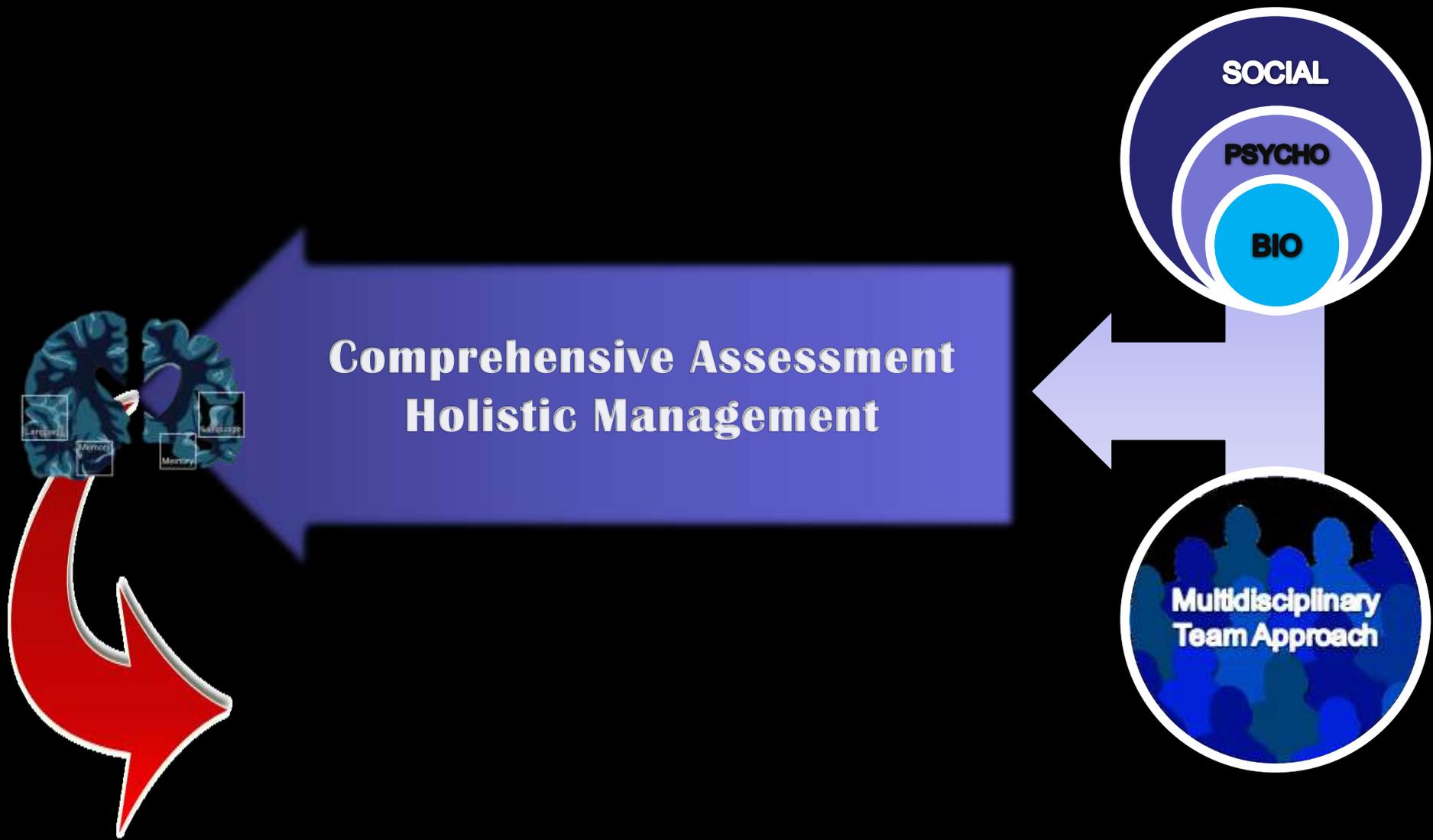
중앙치매센터

예산

운영·조직

의지·비전

전문성
[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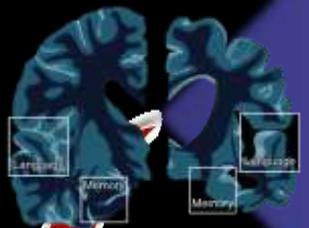
**Comprehensive Assessment
Holistic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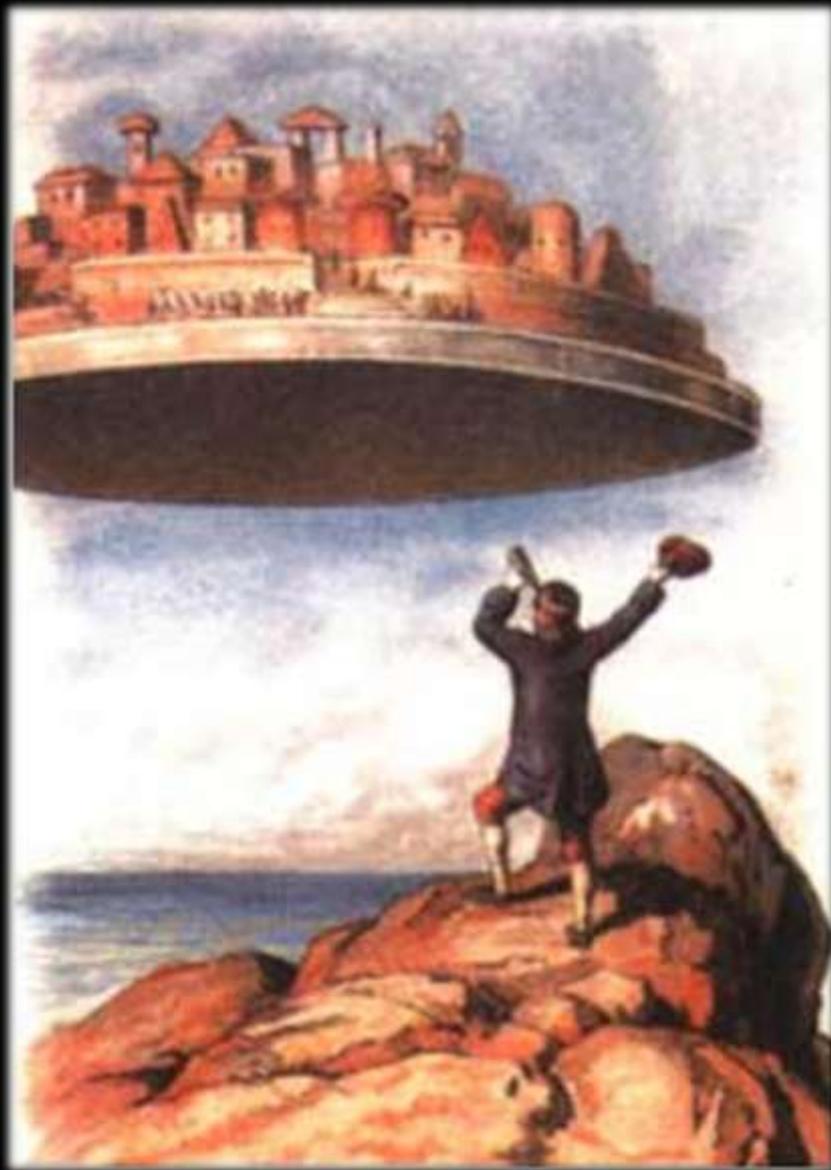
SOCIAL

PSYCHO

BIO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The Gulliver's Travels: A Voyage to Laputa (1726)



Struldbrugs of Luggnagg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한민국 아들·딸 이름으로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함께 돌보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 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 사용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

금치산자는 독자적인
법률행위 불가

한정치산자는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 필요

배우자→직계혈족→
3촌 이내의 친족

반영절차 없음

친족회(실질적인 활동 없었음)

1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전문 후견인 양성 불가)

불가능(법원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개정안

금치산, 한정치산 용어 폐지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피성년후견인은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 가능

피한정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신속·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

후견심판 시 본인의 의사 청취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

복수 또는 법인 후견인 가능
(전문 후견인 양성 가능)

가능(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성인후견제도

치매조기검진사업

Perfect health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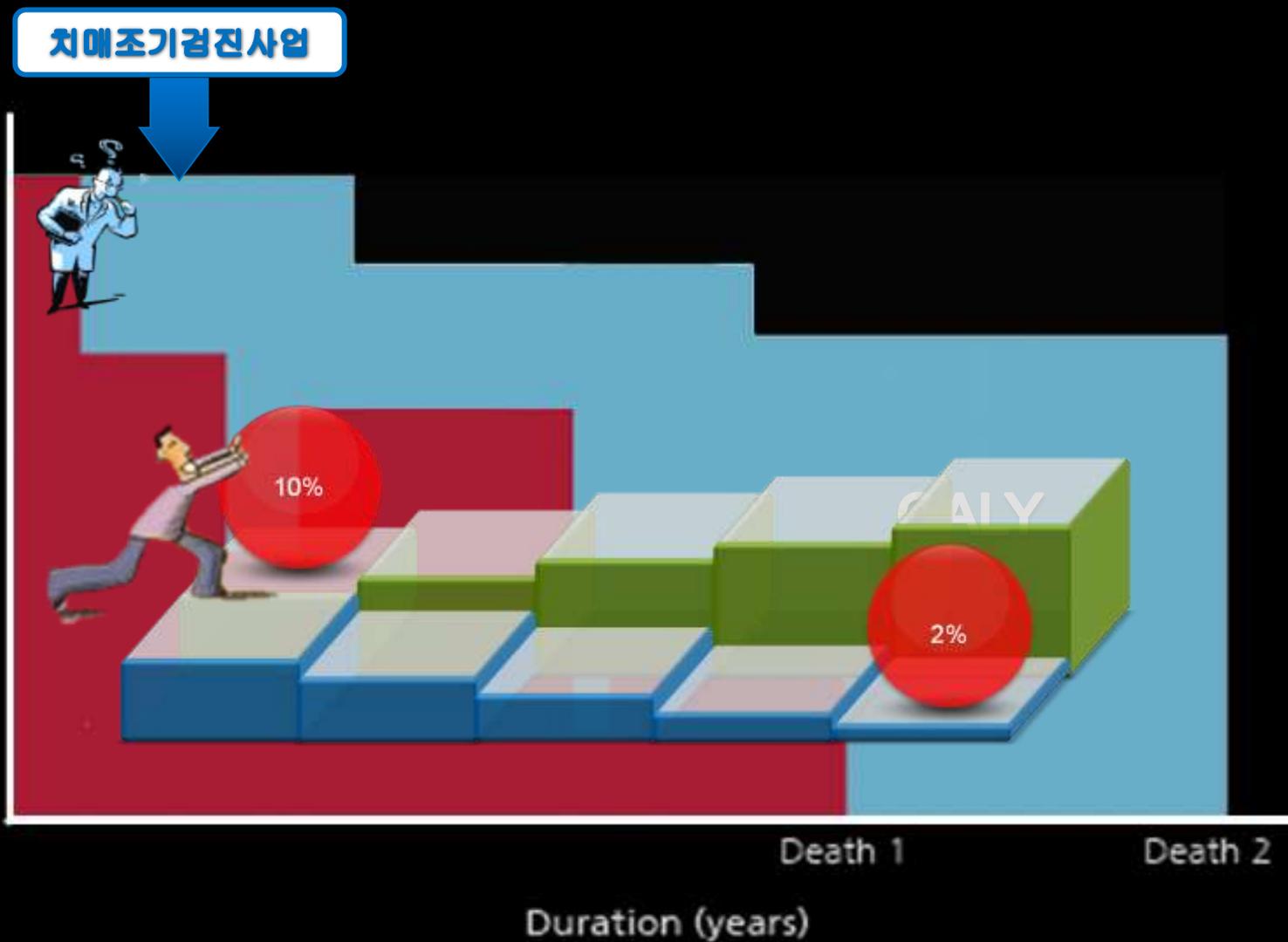
2%

Death 0.0

Death 1

Death 2

Duration (years)



Not What But How



학회

치매케어컨퍼런스
...

치매 신약
의료 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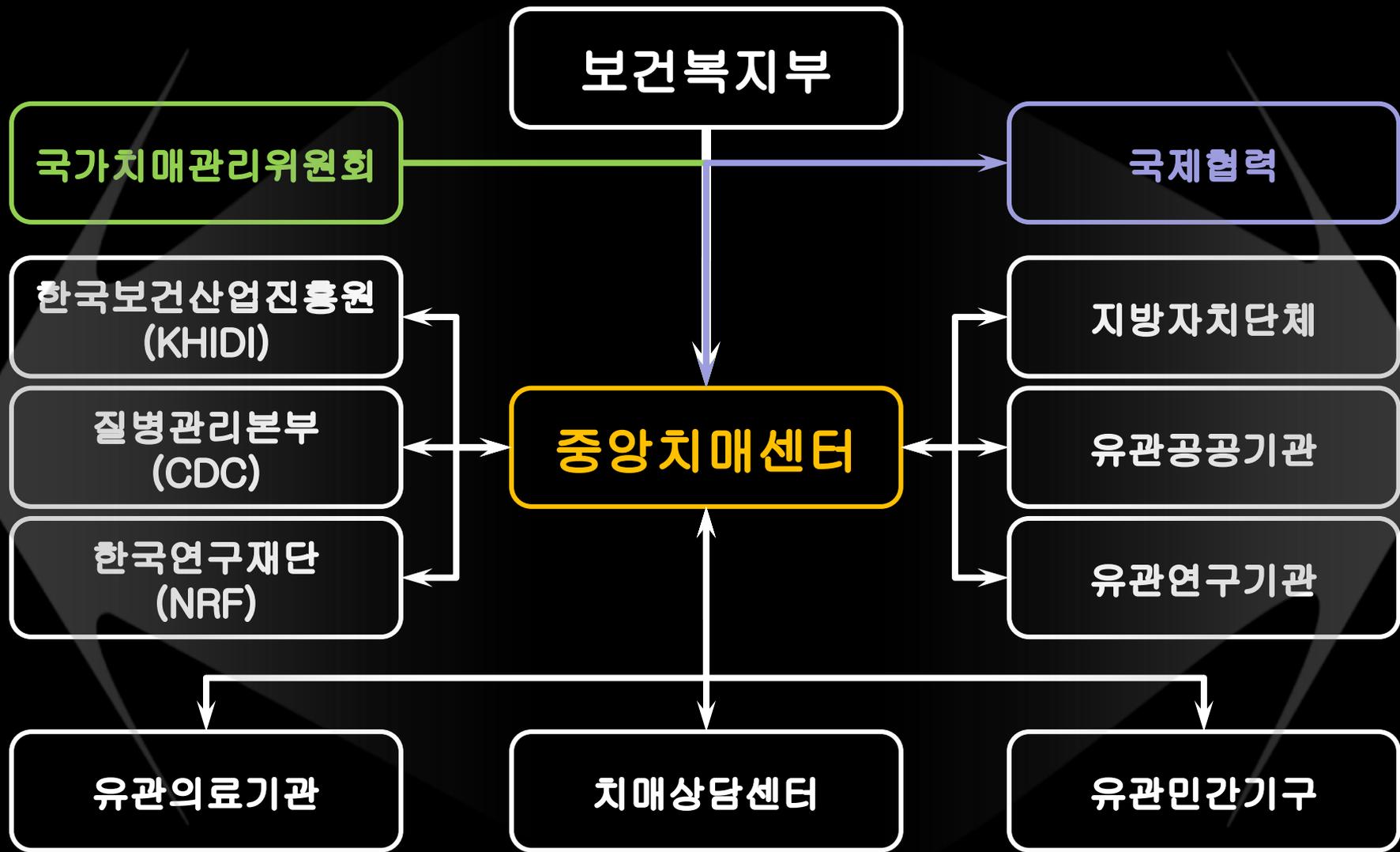
제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조기검진
...

치료

교육

치매전문교육
고령자치매
작업치료사 교육
...





민관 협력



중앙치매센터: 지정



치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